

#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8
----------	-----

제출연월일 : 2007. 8. 24.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조례의 근거지침인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이 폐지되고  
조례의 주요내용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폐지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등<개정 2003.12.30> )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⑤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4.6.25>

⑦시·도지사는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4.6.25>

#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9. 6

교육사회위원회

## I.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8. 24 대전광역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07. 8. 24
- 다. 상 정 일 자 :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7. 9. 6)  
상정, 질의, 심사,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유상혁)

### 1. 제안이유

조례의 근거 지침인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이 폐지되고 조례의 주요 내용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폐지함.

## III. 검토의견 (전문위원 : 안문환)

본 폐지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지침인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이 2005년 5월 30일 폐지되고, 조례의 주요 내용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됨.

IV. 질 의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